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행계획



**김 계 조** |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기획팀장  
password@nema.go.kr

이하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주요 제도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주요제도 및 시행계획

### 1. 들어가며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이후 철저한 사전대비 및 주민대피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재난상황관리 및 긴급대처기능을 개선한 결과, '02년 「루사」, '03년 「매미」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평균 1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던 것에 비해, '04년~'05년에는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예방제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05년 7월 27일 시행, 법률 제7359호)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 비상대처계획,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복구비 선지급 등 근원적 재해예방 및 복구제도 개선을 위한 29개의 신규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 예방위주의 과학적 선진 방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되어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제4조)

택지개발·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근원적으로 재해유발요인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에 개발되었던 파주시 금천지역, 마산만 매립지, 삼척시 남양동 등은 상습 침수·해일 등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근본적 대책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의 제도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예방위주 방재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의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실무지침서를 작성·시달('05. 9. 30)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발령('05. 10.4)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06년에는 전문교육과정 개발, 검토협약의 대상사업별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제12조~제15조)**

개정법률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06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예산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제16조)**

현재 풍수해 예방대책은 하천정비, 하수도정비, 방파제설치 등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지역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는 방재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재관련 부서에는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에서는 시·군·구에서 5년단위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에서 이를 취합하여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작성,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06년 상반기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시달하고 지자체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제19조)**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도달시간이 빨라져 대규모 재해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분당 탄천 등은 택지개발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을 도입하지 않아 호우시 일시에 많은 우수량이 하천으로 유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개발사업 등으로 가증되는 우수유출량을 침투·저류하여 재해유발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에서 우수침투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학적인 우수저류시설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 내풍설계기준 제정·운영(제20조)**

'03년 태풍「매미」내습시, 기간산업시설인 송전탑 및 수출입항 크레인 등이 붕괴되어 전력공급과 국제교역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개정법률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에 대하여 내풍설계 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향후 관계부처에서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내풍설계 기준을 차질없이 제정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바. 침수흔적의 기록보존·활용(제21조)**

현재 대홍수 발생시 침수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재해발생지역의 침수기록 등 자료부족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발생시 관할 구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여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면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 재해예방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해예방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효율적으로 제작·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제작지침 작성, 담당공무원 교육, 재해지도 제작·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설책임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각 지자체별로 제설책임 조례가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 설해예방대책 및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6조~제28조)**

개정법률에서는 설해예방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제설대책, 물자·자재 비축관리, 장비의 확보,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등 조치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앞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제설하도록 되어 있어 설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아.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제35조~제36조)**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발생시 소관부처별 지원사항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긴급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국가재난대응계획(National Response Plan)에 따라 재해발생시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지원기능을 수행하여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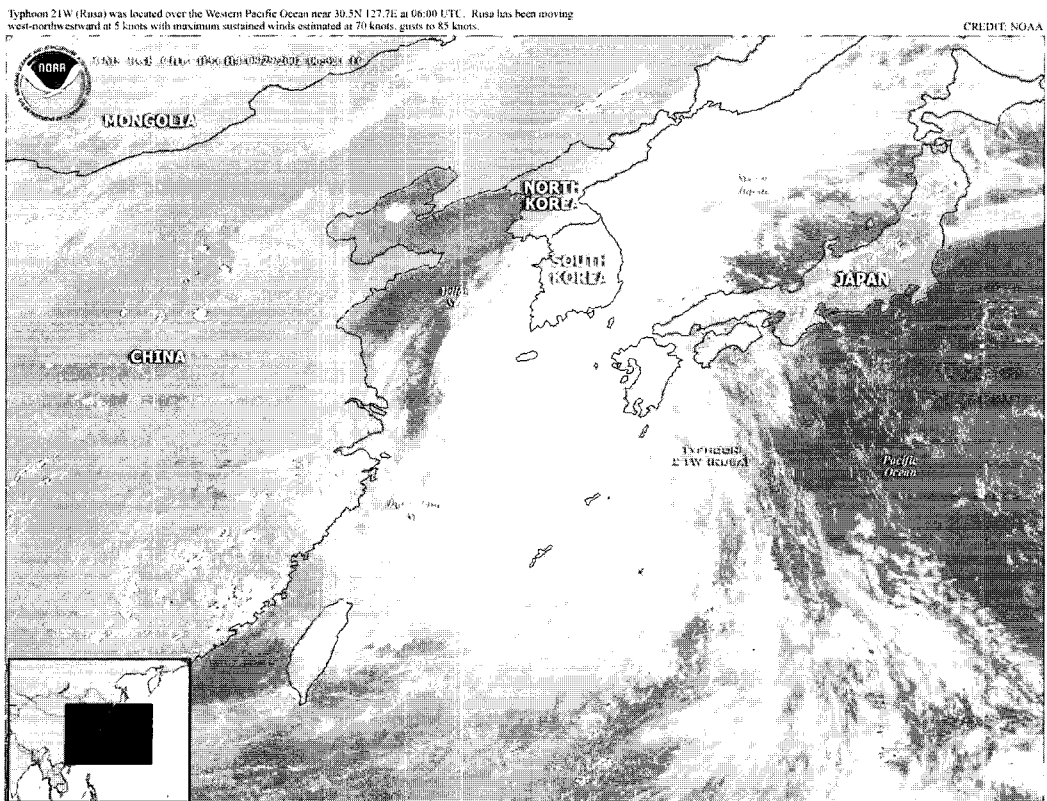


그림 1. 태풍 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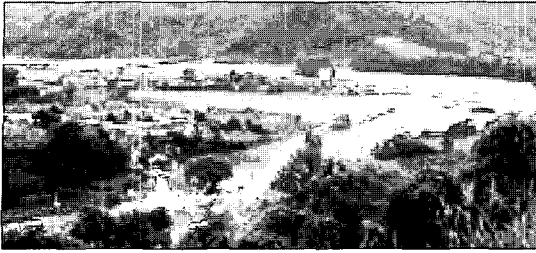


그림 2.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시 관계 부처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긴급지원계획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관계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소관 분야에 대한 긴급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 비상대처계획 수립(제37조)**

최근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댐·저수지 등의 홍수방어능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99년 8월 연천소수력댐 및 '02년 8월 장현저수지 붕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정법률에서는 여객터미널·철도·선로 등 내진설계대상시설물, 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시설물 또는 지역, 다목적댐·발전용댐 등의 관리주체가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비상대처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댐·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표준지침서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였으며, 해일·지진대비 비상대처계획 표준지침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마련 중에 있다.

**차. 복구비 선지급제도(제51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이전의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시설소유자가 먼저 복구를 완료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등을 통해 복구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은 자체복구 능력이 없어 복구를 포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하여 초기 복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구비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복구비 선지급제도 도입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신속하게 생활의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카. 복구예산 정산제도 개선(제52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이전의 복구예산 정산제도는 지급된 복구비의 집행잔액을 예산이 부족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02년 태풍「루사」피해복구와 관련, 농림부 소관의 농경지 복구비는 600여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면, 건설교통부 소관의 하천·도로 복구비는 1,500여억원이 부족하였다. 결국, 농림부 소관 예산은 반납하고 건교부 소관 사업은 건교부 예산 및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다.

개정법률에서는 재해복구비 집행잔액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전용을 승인하면 재해복구비 부족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복구예산 집행의 경직성 해소로 복구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타. 복구비 등의 반환 및 강제징수(제54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구호비·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과오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일선공무원들이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태풍「루사」복구비 지급과정에서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 1억 8,481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바 있었다.

개정법률에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납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58조~제64조)**

최근 예기치 못한 대형 자연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향후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맺음말**

이번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대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것으로서,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등에 관한 혁신 제도들을 대폭 도입하였다.

예방분야에는 행정계획·개발사업 등의 허가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지하공간침수방지기준·지구단위홍수방어 기준 등 재해경감을 위한 각종 기준 제정·활용, 지진재해 경감대책·상습가뭄지역 해소대책 등 재해유형별 종합대책 수립, 국가긴급지원체계·비상대처계획수립을 통한 사전대비체제 구축 등을 의무화 하였다.

연구분야로는 자연재해예방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계적 복구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피해 원인 등의 과학적 조사 및 복구잔액 이전용·복구비 선지급 등 복구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조항을 신설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지침 마련 및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방재분야 전문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및 전문업체 양성, 품셈 개발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범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되어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